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26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4.

발 의 자 : 임호선 · 안도걸 · 이병진
신정훈 · 이연희 · 조인철
복기왕 · 이상식 · 송재봉
위성곤 · 강선우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,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·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하여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업인 등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, 농어촌의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하여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자영업자·농어업인에게도 예술인·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도록 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 및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 신설).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의4(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의4 자영업자·농어업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
적용의 특례

제77조의11(자영업자·농어업인의 출산전후급여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자·농어업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·사산을 이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. 다만,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,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77조의12(준용) ① 자영업자·농어업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, 제14조제1항,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근로자”는 “자영업자·농어업인”으로, “고용된 날”은 “사업의 개시일”로, “고용된 근로자”는 “사업이 개시된 자영업자·농어업인”으로 본다.

② 자영업자·농어업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,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62조 중 “구직급여”는 “출산전후급여등”으로, 제73조제4항 중 “육아휴직 급여”는 “출산전후급여등”으로, “육아휴직”은 “출산 또는 유산·사산”으로, “육아휴직 급여 요건”은 “출산전후급여등 지급 요건”으로 본다.

③ 자영업자·농어업인의 피보험자격확인·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98조까지, 제99조(제2항은 제외한다) 및 제100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” 및 “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”은 각각 “제5장의4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”으로, “사업장”은 각각 “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”로, “사업주”는 각각 “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”로, “근로자”는 각각 “자영업자·농어업인”으로, “육아휴직 급여 등”은 “출산전후급여등”으로, “제4장”은

“제5장의4”로, “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”은 “제5장의4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”
으로, “실업급여·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”은 “출
산전후급여등”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
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산하는 자영업자·농어업인부
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장의4 자영업자·농어업인인</u> <u>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</u> <u>적용의 특례</u>
<u><신 설></u>	<u>제77조의11(자영업자·농어업인</u> <u>의 출산전후급여등) ① 고용노</u> <u>동부장관은 자영업자·농어업</u> <u>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</u> <u>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·</u> <u>사산을 이유로 사업을 계속할</u> <u>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</u> <u>여등을 지급한다. 다만, 같은</u> <u>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</u> <u>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제7</u> <u>7조의4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</u> <u>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</u> <u>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</u> <u>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</u> <u>등의 지급요건, 지급수준 및 지</u> <u>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</u> <u>하는 바에 따른다.</u> <u>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</u> <u>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</u>

<신 설>

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77조의12(준용) ① 자영업자·농어업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, 제14조제1항,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근로자”는 “자영업자·농어업인”으로, “고용된 날”은 “사업의 개시일”로, “고용된 근로자”는 “사업이 개시된 자영업자·농어업인”으로 본다.

② 자영업자·농어업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,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62조 중 “구직급여”는 “출산전후급여등”으로, 제73조제4항 중 “육아휴직 급여”는 “출산전후급여등”으로, “육아휴직”은 “출산 또는 유산·사산”으로, “육아휴직 급여 요건”은 “출산전후급여등 지급 요건”으로 본다.

③ 자영업자·농어업인의 피보험자격확인·출산전후급여등의

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98조까지, 제99조(제2항은 제외한다) 및 제100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” 및 “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”은 각각 “제5장의4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”으로, “사업장”은 각각 “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”로, “사업주”는 각각 “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”로, “근로자”는 각각 “자영업자·농어업인”으로, “육아휴직 급여 등”은 “출산전후급여등”으로, “제4장”은 “제5장의4”로, “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”은 “제5장의4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”으로, “실업급여·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

	<u>산전후휴가 급여등</u> 은 “출산전 <u>후급여등</u> ”으로 본다.
--	--